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6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7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7.
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위생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7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7. 5.(금)
- 검토기간: 2024. 7. 8.(월) ~ 2024. 7. 12.(금)

### 2. 제안이유

- 달서구 어린이·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	現 위탁현황		비고
			위탁기간	수탁기간	
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	달구벌대로 1095 (신당동)	3층 320호 (230.06㎡)	2022. 1. 1 - 2024. 12. 31.	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	

#### 나. 위탁개요

##### ○ 위탁사무
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
-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
- 식단·표준 레시피 개발 및 지원
- 대상별(어린이, 노인·장애인, 원장, 조리원 등) 급식 식생활 교육 등

○ 위탁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 12. 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※ 수탁심사위원회는 전문가, 구의원, 공무원 등 6명에서 9명으로 구성

### 4. 관련근거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서 제7조까지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(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)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 사각지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314개<sup>1)</sup>(어린이집 228개소, 유치원 46개소, 아동복지시설 등 40개소)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, 2024년 하반기 노인·장애인 복지시설 35개소 이상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.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21명의 직원이 3개팀(운영·기획·영양)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국·시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9억 4,000만원(구비 2억 3,500만원 포함)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.
- 2024년 6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를 거쳐 “적정의견”을 받은 바 있고,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례에 따른 기간 내로 위탁하는 등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--

1) 2024년 6월 1일 기준, 어린이집 228개소 6,428명, 유치원 46개소 5,041명, 아동복지시설 등 40개소 931명으로 총 12,400명을 관리하고 있음.

# 관계법령

## 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제21조(설치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삭제 <2023. 8. 8.>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## 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제12조의 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
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## 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
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
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